

신구 대비표

현 재	개 정 (안)	비 고
<p>제2조(이월학점의 범위) 이월학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교과학점에 한한다.</p> <p>1~2. 생략</p>	<p>제2조(이월학점의 범위) 이월학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졸업학점 중 교과학점의 1/2에 한한다.</p> <p>1~2. 현행과 동일</p>	<p>- 이월학점 범위 명확화에 따른 개정</p> <p>- 적용: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</p>